

# 2022년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2

2022.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03

# 2022년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2)

신지형/황유선/송민선/김호정

2022.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2년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신지형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황유선 연구위원

송민선 전문연구원

김호정 전문연구원





# 목 차

요약문 .....	vii
제 1 장 방송통신 분야 2022년 규제비용분석 .....	1
제 2 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 .....	2
제 1 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 .....	2
1. 규제 개요 .....	2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	3
3. 주요 분석 내용 .....	3
제 2 절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	7
1. 규제 개요 .....	7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	7
3. 주요 분석 내용 .....	8
[부록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	12
[부록 2]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를 규제영향분석서 .....	20
참고문헌 .....	34

# 표 목 차

〈표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3
〈표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제비용분석표 .....	4
〈표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제 차등화 실적 분석표 .....	6
〈표 2-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	8

# 그림 목 차

[그림 2-1] 장애인 방송물 추가제작 비용 산출 산식 .....	9
[그림 2-2] 한국방송공사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서(2021년) .....	9
[그림 2-3]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 .....	10



# 요 약 문

## 1. 제 목

2022년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2022년에 제·개정된 방송통신 분야 법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비용관리제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규제의 개정으로 인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관련 고시 개정의 경우 분담금 징수 방식의 변화에 따라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비용이 발생하며, 사업자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 규제비용 감소 효과 또한 나타난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경우 장애인 방송물 편성 증가에 의

한 장애인 방송물의 추가제작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는 시·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덜어주고자 지원금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해당 방송사업자에 발생하는 비용 산출에 반영한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범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축적하고,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면밀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방송통신 분야 규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기대효과

본 연구가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규제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SUMMARY

## 1. Title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2

##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tent of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regulations enacted and revised in 2022. While reviewing the benefits and costs incurred by each amend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through such review.

##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cost and benefit analysis is applied to various regulations revised or enacted in 2022 by KCC related to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 4. Research Results

Cost and benefit analysis on two regulations such as rule abou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und and rule for public advertisement. The first regulation generates direct costs while it also reduce regulatory costs for medium and small sized companies. The second regulation increases direct costs of broadcasting production for disabilities.

##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rough this study, concrete and practical examples of regulatory cos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are accumulated, and by presenting measures to reduce regulatory costs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the utilizatio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manual is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in the long term, through careful cost analysi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 6. Expectations

We believ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mproving regulatory quality while increasing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 CONTENTS

Chapter 1.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for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ctor Regulations in 2022

Chapter 2. Regulatory Cost-benefit Analysis by Regulation



# 제 1 장 방송통신 분야 2022년 규제비용분석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 제·개정 규제안에 대한 비용분석을 검토한다. 검토대상이 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 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 ②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각 규제의 개정에 앞서 진행된 규제영향평가 중 비용분석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관련 고시 개정안의 경우 분담금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비용은 연간균등 개념으로 약 36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에 따라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차등화에 따른 비용 감소액은 연간 1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실질적인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편성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장애인 방송물 추가 제작비용을 직접비용으로 간주한다. 방송사업자별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 추가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시·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덜어주고자 보조하는 지원금과 각 방송사업자가 이미 달성하고 있는 장애인 방송물 편성 비율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방송물 추가 제작 직접비용은 연간균등 개념으로 약 천 사백만 원이다.

## 제 2 장 개정안별 규제비용분석

### 제 1 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개정

#### 1. 규제 개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아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승인 대상사업자인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담금 징수율을 산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에 개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초기 적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에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산정방식을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 결정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의결하였다. 따라서, 2022년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기준을 보완하는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본징수율 산출의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조정 계수는 1로 하고, 중앙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조정 계수는 0.9234에서 0.9310로 개정한다. 그리고,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4.23%를 감경하던 것을 최근 3년(2019년~2021년) 평균 직접 수신 비율 11.67%을 기준으로 분담금 감경 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표 2-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기존안	개정안
지역·중소방송 조정계수	0.9234	0.93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분담금 감경 비율	14.23%	11.67%

주: 기본징수율(%) 산정은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 상수 + {(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조 원)÷1조 원}] × 조정계수 로 하며,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 상수는 부록의 규제비용분석서를 참고 하기 바람

##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개선은 분담금 고시 개정을 위한 산정기준 보완 관련 정책 연구 수행('21년 6월~12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3회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기획재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심의회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본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중장기 추세를 고려하여 3년 후인 2025년 12월 재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 3. 주요 분석 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각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조정 계수가 달라짐에 따라 분담금 산정액이 변경된다. 따라서 고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각 방송사업자별 분담금을 현행 유지 시 산출되는 분담금과 비교해 보면 분담금 산정액은 방송사업자별 방송광고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업자와 감소하는 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각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변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본 개정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비용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각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매출액 원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방송광고매출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매출액 구간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기본징수율을 산정하고, 각 방송사업자의 구분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징수율을 산출한다. 최종징수율을 방송광고매출액에 곱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액을 산출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개정 전 기준에 따른 징수액 산출액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 징수액의 차액의 합산 액을 총 규제비용으로 간주한다.

〈표 2-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제비용분석표

규제비용분석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구분	비용(-)	편액(+)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	3,472		3,472	3,472	
2년차	3,472		3,472	3,322	
3년차	3,472		3,472	3,1789	
<b>계</b>			<b>10,416</b>	<b>9,973</b>	<b>3,472</b>

본 고시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영향평가는 정성모형과 정량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고시 개정으로 인한 분담금 징수율 인상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되는데,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연합뉴스TV 1개사이다. 연합뉴스TV는 분담금 징수율 인상이 예상되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규제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의 정량적인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정성적 모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영향평가의 정성적 분석은 두 가지 요건을 고려한다. 첫째,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IPTV,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사 사례 검토에 따른 차등화 적용 타당성 여부의 판단을 진행한다. 방송의 지역성(지역방송지원특별법 상의 지역방송사)과 방송매체의 다양성(라디오, DMB) 유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지상파방송 중 중소규모인 지역방송(26개)과 중소방송(라디오 11개, DMB 6개) 43개사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징수율의 1/3 감경한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주파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11.67%를 감경하여 차등 적용한다. 다만, 연합뉴스TV는 '21년 방송서비스 총매출액은 721억원이고, 차등화 대상인 지역방송과 라디오DBM와는 규모의 차

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예비 분석의 정량 모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각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 분담금이 산정되는 부분에 있어 중소기업에 경감되어 징수되는 규제비용을 설명한다. 본 개정안은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징수율을 산정하고 있어, 매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 및 분담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매뉴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이다. 본 규제의 피규제자인 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정보통신업에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평균매출액 800억 원 이하이므로,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 실적 산출에 있어 대상 사업자는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의 사업자로 규정한다. 한편, 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인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모두 중소기업으로 가정한다. 이는 총자산이 5천억 원이면서 매출액 800억 원일 경우, 총자산 대비 매출액(총자산 회전율)은 0.16에 불과하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자산회전율은 정보서비스업에서 0.73, 전산업 기준 0.83 수준으로 0.16 대비 4~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매출액이 8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전체 48개 피규제자 중 중소기업은 총 39개 사업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 실적은 방송사업 매출액 80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분담금 대비 중소기업에게 부과된 분담금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하지만, 하지만,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사업 매출액이 아닌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은 방송사업 매출액이 아닌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방송사업 매출액 80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들의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방송광고 매출액의 비중을 이용하여 방송사업 매출액이 800억 원일 경우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담금 징수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차등화 실적은 중소기업 3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안에 따른 분담금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이상의 방법론 적용에 따른 규제 차등화 실적 규모는 연간균등 약 133백만 원이며, 산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39개 사업자의 2022년 분담금 총액

은 약 3,178백만 원이다. 기존징수율 적용 시 2022년 분담금 총액은 약 3,308백만 원이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차등화에 따른 규제비용 감소액은 약 130백만 원(3,308백만 원~3,178백만 원)이다. 최근 3년간 방송광고 매출액이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나 사업자군별 차이를 고려하여 2022년, 2023년 방송광고 매출액을 별도로 추산하여 규제비용 차등화 실적을 산출한다. 최근 3년간 지역지상파, 라디오·DMB,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의 각 연평균 방송광고매출액 증감율은 2.8%, -6.0%, 8.7%로 이를 반영하면 방송광고매출액은 2022년 2.6%, 2023년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3년간 발생하는 차등화 실적의 현재가치는 약 380백만 원, 연간균등가치는 약 127백만 원이다.

〈표 2-3〉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제 차등화 실적 분석표

규제비용분석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구분	비용(-)	편액(+)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		130	-130	-130	
2년차		127	-127	-121	
3년차		123	-123	-113	
<b>계</b>		<b>380</b>	<b>-380</b>	<b>-364</b>	<b>-127</b>

본 개정안은 3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년간 규제비용을 추산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매출이 아닌, 방송광고매출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산정하므로, 지난 방송광고매출액의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방송광고매출액을 추정하여 규제비용 분석을 실시한다. 방송광고매출액은 각 방송사업자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지상파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 제 2 절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 1. 규제 개요

장애인의 기본적 권익인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방송물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방송법 제69조제8항,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하지만, 장애인 방송물의 의무 편성 비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 단체 등의 지속적인 개선 권고 요청이 있었다. 유관 단체에서는 장애인 방송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방송물의 의무 편성 비율을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의무 편성 비율을 한국수어방송의 경우 7%에서 10%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재방송 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도록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 2. 관련 법률 제정 추이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정 권고사항이 접수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이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관련 내용을 반영,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연구반 최종회의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마련된 개정안은 2022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다.

〈표 2-4〉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대상방송사업자	기존안	개정안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총 36개 사업자)	5%	7%
화면해설방송(재방송 비율)	지상파(지역 총국, 지역 MBC, 지역 민방 등 제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총 10개 사업자)	30%	25%

### 3. 주요 분석 내용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방송물 편성 비율이 확대 되면, 방송사업자는 개정된 장애인 방송물 의무편성을 위해 장애인 방송물에 대한 추가 제작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비용이 부과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장애인 방송물의 종류는 한국수어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이다.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 방송사업자는 총 36개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해당된다.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영방송사업자들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피규제자로 구분되며, 전체 방송사업자 수는 10개사이다. 본 개정안에 의해 장애인방송물의 추가제작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을 고려한다. 첫째, 각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편성 실적이 개정된 장애인 방송물 의무편성 실적을 이미 상회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편성 실적이 의무편성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의무편성 비율의 확대 혹은 재방송 편성 비율 축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실적은 연도별 편차가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자료의 평균치를 살펴보고,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물 편성 실적이 개정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과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장애인 방송물의 추가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비용 산출에 적용한다.

[그림 2-1] 장애인 방송물 추가제작 비용 산출 산식

**한국수어방송 추가제작 비용 = 방송프로그램 연간 편성 시간<sup>D</sup> × max(7% -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0)<sup>2)</sup> × 한국수어방송 평균 제작단가**

- 1) 최근 3년 연간 편성시간의 평균(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
- 2) 최근 3년 연간 한국 수어방송편성비율 평균이 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성해야하는 비율(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화면해설방송 추가제작 비용 = 방송프로그램 연간 편성 시간<sup>D</sup> × max(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sup>2)</sup> - 25%, 0) ×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비율(10%) × 화면해설방송 평균 제작단가**

- 1) 최근 3년 연간 편성시간의 평균(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
- 2) 최근 3년 연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 평균이 25%를 상회하는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축소 편성해야하는 비율(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둘째,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물 의무편성에 대한 규제와 관계없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회공헌 등의 사유로 장애인방송물 편성을 확대하는 사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러한 방송사업자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 증가분을 제외하고 규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을 고려한다.

[그림 2-2] 한국방송공사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서(2021년)

한국방송공사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서(2021년)

과제 8.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 장애인 정보 서비스와 다문화 및 외국인을 위한 언어 서비스 강화

사업 세부내용

1. 화면해설방송 확대로 시각 장애인의 다양한 미디어 접근성 제고
  - 현재 방통위 고시 의무비율 10%(초방비율 6.5%, 2020년 기준)를 12%까지 확대(초방비율 7%, 2021년 기준)
2. 수어방송 확대로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증대
  - 메인뉴스인 KBS 뉴스9의 수어방송 개시(연간 18,500분 증가)에 이어 뉴스 수어방송 지속 확대

셋째, 각 유형별 장애인 방송물 추가 제작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장애인 방송물 분당 평균 제작 단가는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매년 10월에 공고되는 자료를 활용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장애인방송 고시」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연도별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를 산정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명의로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지난 10년 간 장애인방송물 분당 평균 제작 단가를 살펴보았을 때, 일관된 변동 추이를 보이지 않아 시장 변동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장 최신 자료인 분석 기준 연도 전년도 말 기준 자료를 적용한다.

[그림 2-3]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총계<sup>1)</sup> ÷ 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총계<sup>2)</sup>**

- 1)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제작비(본방송 기준) 총계
- 2)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시간(본방송 기준) 총계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참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비 및 장애인 방송 편성시간(본방송 기준) 적용

넷째, 정부는 시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 제작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경감하고자, 한국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폐쇄자막방송의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 지원금을 보조하고 있다. 각 방송사업자는 매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사업에 공모하면 심사를 거쳐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규제비용 분석시점인 2022년에 방송사업자가 지원받는 보조금 자료를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 직접비용 산출에 활용한다.

다섯째, 본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6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3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되어 있으므로 3년간 규제비용을 추산한다. 규제시행시점이 규제비용 산출 시작 시점인 2022년 하반기인 것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기간 1년차의 비용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점에 따라 연간비용의 50%로

추정한다. 직접비용의 산출에 고려하여야 하는 각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방송물 제작량, 의무 편성 비율 준수 여부, 정부의 장애인 방송물 제작 지원금의 일정한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2년간 추정되는 직접비용은 분석기간동안 고정적으로 매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총 비용을 추정한다.

[부록 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규제 개요〉

기본 정보	1. 규제사무명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2. 규제조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3. 위임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4. 유형	강화	5. 입법예고	2022. 6. 9. ~ 6. 29.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배경)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의결('19. 8) 함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을 추진</li> <li>*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li> <li>○ (정부개입 필요성) 방송시장 여건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담금 부과를 위한 징수율 조정 필요</li> </ul>														
	7. 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징수율 개선)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의 매출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15~'18년 방송사업매출액 차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18~'21년 방송사업매출액 차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상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3조 7,410억 원) - '15(4조 516억 원) = △3,106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1(3조 9,244억 원) - '18(3조 7,410억 원) = +1,834억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편· 보도PP</td> <td style="text-align: center;">'18(9,640억 원) - '15(6,845억 원) = +2,795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1(1조 2,630억 원) - '18(9,640억 원) = +2,990억 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8(4조 7,050억 원) - '15(4조 7,361억 원) = △311억 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1(5조 1,874억 원) - '18(4조 7,050억 원) = +4,824억 원</td> </tr> </tbody> </table>			구분	'15~'18년 방송사업매출액 차액	'18~'21년 방송사업매출액 차액	지상파	'18(3조 7,410억 원) - '15(4조 516억 원) = △3,106억 원	'21(3조 9,244억 원) - '18(3조 7,410억 원) = +1,834억 원	종편· 보도PP	'18(9,640억 원) - '15(6,845억 원) = +2,795억 원	'21(1조 2,630억 원) - '18(9,640억 원) = +2,990억 원	계	'18(4조 7,050억 원) - '15(4조 7,361억 원) = △311억 원	'21(5조 1,874억 원) - '18(4조 7,050억 원) = +4,824억 원
	구분	'15~'18년 방송사업매출액 차액	'18~'21년 방송사업매출액 차액													
	지상파	'18(3조 7,410억 원) - '15(4조 516억 원) = △3,106억 원	'21(3조 9,244억 원) - '18(3조 7,410억 원) = +1,834억 원													
	종편· 보도PP	'18(9,640억 원) - '15(6,845억 원) = +2,795억 원	'21(1조 2,630억 원) - '18(9,640억 원) = +2,990억 원													
계	'18(4조 7,050억 원) - '15(4조 7,361억 원) = △311억 원	'21(5조 1,874억 원) - '18(4조 7,050억 원) = +4,824억 원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부과대상 사업자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상파 방송사업자(42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앙지상파(4), 지역MBC(16), 지역민방(10), 라디오(10), DMB(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4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에티비씨,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2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td> </tr> </tbody> </table>			구분	부과대상 사업자명	지상파 방송사업자(42사)	중앙지상파(4), 지역MBC(16), 지역민방(10), 라디오(10), DMB(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4사)	(주)에티비씨,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2사)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구분	부과대상 사업자명															
지상파 방송사업자(42사)	중앙지상파(4), 지역MBC(16), 지역민방(10), 라디오(10), DMB(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4사)	(주)에티비씨, (주)조선방송, (주)채널에이, (주)매일방송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2사)	(주)와이티엔, (주)연합뉴스티브이															

규제의 필요성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간 규제체계의 차별 해소를 위해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를 결정방식을 일원화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 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0,830.16	0	10,830.16
		피규제자 이외	0	0	0
	11.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		해당없음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관리제 (단위: 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0,830.16	0	3,605.96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b>기본징수율의 산정(제4조제1항 관련)</b></p>	<p>[별표 1]</p> <p><b>기본징수율의 산정(제4조제1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방송광고 매출액 구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징수율(%) 산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조 원 초과</td> <td><math>[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 원}) \div 1\text{조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 원 초과 1조원 이하</td> <td><math>[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 원}) \div 9,0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td> <td><math>[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 원}) \div 5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td> <td><math>[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 원}) \div 4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td> <td><math>[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 원})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 원 이하</td> <td><math>[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body> </table>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 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 원}) \div 1\text{조 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 원 초과 1조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 원}) \div 9,0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 원}) \div 5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 원}) \div 4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 원})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방송광고 매출액 구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본징수율(%) 산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조 원 초과</td> <td><math>[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 원}) \div 1\text{조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td> <td><math>[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 원}) \div 9,0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td> <td><math>[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 원}) \div 5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td> <td><math>[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 원}) \div 4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td> <td><math>[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 원})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억 원 이하</td> <td><math>[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math></td> </tr> </tbody> </table>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 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 원}) \div 1\text{조 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 원}) \div 9,0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 원}) \div 5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 원}) \div 4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 원})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 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 원}) \div 1\text{조 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 원 초과 1조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 원}) \div 9,0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 원}) \div 5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 원}) \div 4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 원})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1조 원 초과	$[5.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text{조 원}) \div 1\text{조 원}] \times \text{조정계수}$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	$[4.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0\text{억 원}) \div 9,0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3.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0\text{억 원}) \div 5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2.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100\text{억 원}) \div 40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 50\text{억 원})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50억 원 이하	$[0.0 + (\text{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div 50\text{억 원})] \times \text{조정계수}$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li> <li>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중기 추세를 고려하여 0.0766을 감경하여 조정한 0.9234로 한다.</li> </ol>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li> <li>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추세를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1로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069를 감경하여 조정한 0.931로 한다.</li> </ol>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분담금 산정기준 일원화(수정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10,830.16		10,830.1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0,830.16
기업순비용		10,830.16	연간균등순비용	3,605.9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분담금 산정기준 일원화(수정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정량) 세분류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활동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분담금 납부액
편익항목	기타
비용	10,830,159,54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별 최종징수율×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li> <li>－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최종징수율 산정</li> <li>－ 사업자별 분담금은 최종징수율 곱하기 방송광고 매출액</li> <li>－ 직접비용은 기존 징수율 기준 분담금 대비 증가액</li> </ul>

산식	<p>1) 개요 및 결과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사 분담금 징수율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li> <li>-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67%를 기준으로 반영</li> <li>- 개정안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은 매출 증가에 따라 징수율 및 분담금 인상, 지역·중소방송은 일부 인하 효과</li> <li>- 전체적으로는 분담금 인상 효과가 발생</li> <li>- 본 개정안에 다른 효과는 방발기금 분담금 인하로 이는 직접비용에 해당</li> </ul> </li> <li>○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은 연간균등 3,606백만 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안의 피규제자는 지상파, 종편·보도채널로 전체 사업자 수는 48개사</li> <li>- 3년 간 발생하는 직접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은 10,359백만 원, 연간균등비용은 3,606백만 원</li> <li>-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아래 설명 참조</li> </ul> </li> <li>○ 중소기업 차등화 적용에 따른 차등화 실적은 연간균등 약 133백만 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간 발생하는 차등화 실적의 현재가치 총액은 약 383백만원</li> <li>-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아래 설명 참조</li> </ul> </li> </ul> <p>2) 직접편의 산출(분담금 증가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본 개정안에 따른 2022년 분담금 증가 추정액은 약 3,472백만 원 (48,087백만 원-44,616백만 원=3,472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안에 따른 2022년 방발기금 분담금 추정액은 약 48,087백만원</li> <li>- 기존(현행유지)안을 적용할 경우 2022년 분담금 총액은 약 44,616백만원 (사업자별 최종징수율 및 분담금은 별표1참조)</li> <li>※ 방송광고 매출액 출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li> </ul> </li> <li>○ 본 개정안의 비용분석 기간은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안은 3년 단위로 폐지 또는 개정</li> <li>- 2021년 방송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2022년, 2023년에 대한 추정액 산출</li> <li>- 2022년, 2023년 분담금 증가 추정액은 각각 약 3,472백만 원, 3,472백만 원으로 추정</li> </ul> </li> </ul>
----	--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편익 추정액은 2022년 3,472백만 원, 2023년 3,472백만 원, 2024년 3,472백만 원
  - 3년간 발생하는 직접편익의 현재가치 총액은 약 9,973백만 원
  - 연간균등순편익은 약 3,472백만 원

〈표 1〉 규제비용분석표

규제비용분석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구분	비용(-)	편익(+)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	3,472		3,472	3,472	
2년차	3,472		3,472	3,322	
3년차	3,472		3,472	3,1789	
<b>계</b>			<b>10,416</b>	<b>9,973</b>	<b>3,472</b>

〔별표 1〕 개정안에 따른 방송사업자 별 분담금 전망

(단위: 억 원, %)

산식

구분	사업자명	2021년 광고매출액	2022년(개정안)		2022년(기존안)	
			최종 징수율	예상 분담금	최종 징수율	예상 분담금
중앙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2,705	2.79%	76	2.58%	70
	(주)문화방송	2,741	4.19%	115	3.87%	106
	(주)에스비에스	3,536	4.28%	151	3.95%	140
	한국교육방송공사	261	1.10%	3	1.48%	4
지역 MBC	(주)엠비씨강원영동	96	1.04%	1	1.18%	1
	(주)엠비씨경남	126	0.64%	1	0.95%	1
	(주)엠비씨충북	111	0.94%	1	0.94%	1
	광주문화방송(주)	93	0.87%	1	0.86%	1
	대구문화방송(주)	102	1.25%	1	1.24%	1
	대전문화방송(주)	97	1.05%	1	1.20%	1
	목포문화방송(주)	51	0.56%	0	0.63%	0
	부산문화방송(주)	125	0.96%	1	0.95%	1
	안동문화방송(주)	47	0.44%	-	0.44%	-
	여수문화방송(주)	49	0.46%	-	0.46%	-
	울산문화방송(주)	69	0.64%	0	0.63%	0
	원주문화방송(주)	47	0.29%	-	0.44%	-
전주문화방송(주)	73	0.79%	1	0.90%	1	

구분	사업자명	2021년 광고매출액	2022년(개정안)		2022년(기존안)	
			최종 징수율	예상 분담금	최종 징수율	예상 분담금
지역 MBC	제주문화방송(주)	63	0.39%	0	0.58%	0
	춘천문화방송(주)	52	0.57%	0	0.64%	0
	포항문화방송(주)	66	0.41%	0	0.61%	0
지역 민방	(주)광주방송	135	1.13%	2	1.29%	2
	(주)대전방송	113	1.10%	1	1.25%	1
	(주)울산방송	69	0.64%	0	0.63%	0
	(주)전주방송	72	0.78%	1	0.89%	1
	(주)제주방송	67	0.73%	0	0.82%	1
	(주)G1	100	1.24%	1	1.23%	1
	(주)청주방송	75	0.81%	1	0.92%	1
	(주)케이엔엔	211	1.24%	3	1.40%	3
	(주)티비씨	158	1.16%	2	1.32%	2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186	1.37%	0	1.36%	0
라디오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	6	0.04%	-	0.06%	-
	(재)광주영어방송재단	1	0.01%	-	0.01%	-
	(재)부산영어방송재단	1	0.01%	-	0.01%	-
	(주)와이티엔라디오	15	0.19%	0	0.18%	0
	(주)경인방송	10	0.11%	0	0.13%	0
	(재)가톨릭평화방송	42	0.26%	-	0.39%	-
	(재)극동방송	13	0.16%	0	0.16%	0
	(재)CBS기독교방송	223	1.43%	3	1.42%	3
	(재)불교방송	33	0.41%	0	0.40%	0
	(재)원음방송	16	0.20%	0	0.20%	0
DMB	(주)와이티엔디엠비	9	0.09%	-	0.11%	-
	한국디엠비(주)	4	0.01%	-	0.02%	-
<b>지상파소계</b>		<b>12,071</b>	<b>-</b>	<b>368</b>	<b>-</b>	<b>345</b>
중편	(주)제이티비씨	1,850	1.57%	1	1.35%	0
	(주)조선방송	1,458	3.58%	52	3.21%	47
	(주)매일방송	701	3.01%	20	2.69%	18
	(주)채널에이	700	3.00%	15	2.69%	13
보도	(주)와이티엔	595	2.82%	17	2.53%	15
	(주)연합뉴스티브이	455	2.55%	9	2.29%	8
<b>중편보도소계</b>		<b>5,759</b>	<b>-</b>	<b>113</b>	<b>-</b>	<b>101</b>
<b>지상파 및 중편보도합계</b>		<b>17,829</b>	<b>-</b>	<b>481</b>	<b>-</b>	<b>446</b>

② 피규제 이외 국민의 편익: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공익목적 사용
편의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li> <li>- 주파수할당 대가</li> <li>- 방송사업자의 분담금</li> <li>-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등</li> </ul> </li> <li>○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li> <li>-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li> <li>-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li> <li>- 공익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li> <li>-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li> <li>-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li> <li>-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li> <li>-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li> <li>-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li> <li>- 방송통신 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남북 교류 협력 지원</li> <li>-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li> <li>-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등</li> </ul> </li> </ul>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p>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은 이 외에도 지상파방송, IPTV, 위성방송, TV홈쇼핑,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과 통신사업자의 주파수할당대가로 구성됨.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권 강화를 위한 사업, R&amp;D 등 공익 공공 목적의 방송통신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일반 국민(시청자)의 권익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p>

##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 개요〉

기본 정보	1. 규제사무명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2. 규제조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6조		
	3. 위임법령	방송법 제69조제8항,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4. 유형	강화	5. 입법예고	2022.08.01 ~ 2022.08.22
규제의 필요성	6.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법 제69조제8항,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이 의무화되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제정·운영 중 -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 등에 따라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등을 통한 실질적인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li> <li>* 농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li> <li>**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확대(5%→7%),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30%→25%)</li> <li>○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에 접근 및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li> </ul>		
규제의 필요성	7. 규제내용	<p>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 한하여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을 5%→7%로 확대</li> <li>○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방송(지역방송 제외)·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을 30%→25%이하로 축소</li> </ul>		
	8.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사업자 및 시각·청각장애인 단체</li> </ul>		

규제의 필요성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 대상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인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를 향유할 권리 및 방송접근권 제고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 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 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1.26		41.26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요내용	해당 없음		
11. 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	
기타	12. 일몰설정 여부	설정(행정규칙 일몰조문(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매 3년마다 검토)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 비용감축제 (단위: 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41.26	0	14.36
15. 규제정비 계획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① 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p> <p>2. 방송법 제69조의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와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p> <p>3.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 지역(총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서울이외의 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p> <p>4. 생략</p> <p>5.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비율 중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 편성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연도별 목표치는 별표3과 같다.</p>	<p>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① ----- -----.</p> <p>1. ----- ----- -----한국 수어방송 7%----- -----.</p> <p>2. ----- ----- ----- -----한국수어방송 7% ----- -----.</p> <p>3. ----- ----- ----- ----- -----한국수어방송 7%----- -----.</p> <p>4. 현행과 같음</p> <p>5. ----- ----- -----한국수어방 송 7%----- -----,</p> <p>⑥ ----- -----재방송 편성을 25%이하로 축소하여야 한다.</p>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확대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수정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	41.26		41.26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1.26		41.26
기업순비용		41.26	연간균등순비용	14.36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확대 및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수정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정량)영향 집단명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활동제목	장애인 방송물 추가 제작 비용
비용항목	기타
비용	41,263,09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별 한국 수어 방송 의무편성비율 증가 및 화면해설 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에 따른 장애인 방송물 제작 비용</li> <li>–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별 한국수어방송 추가 제작 비용은 방송프로그램 연간 편성 시간<sup>1)</sup> × max(7% - 한국수어방송편성 비율<sup>1)</sup>, 0)<sup>2)</sup> × 한국수어방송 제작단가</li> <li>1) 최근 3년 평균자료 사용</li> <li>2) 최근 3년 연간 한국 수어방송편성비율 평균이 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성해야하는 비율</li> <li>–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별 화면해설방송 추가 제작 비용은 방송프로그램 연간 편성 시간<sup>1)</sup> × max(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sup>1)</sup> - 25%, 0) ×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비율(10%) × 화면해설방송제작단가</li> <li>1) 최근3년 평균자료 사용</li> <li>2) 최근 3년 연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 평균이 25%를 상회하는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축소 편성해야하는 비율</li> <li>– 직접비용은 한국수어방송과 화면해설방송 추가 제작비용의 합</li> </ul>
근거설명	<p>1)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개정안은 미디어 환경 변화, 장애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 등에 따라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확대</li> <li>–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필수지정사업자(고시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한하여 제도 도입 당시와 변화된 상황, 한국수어방송 편성실태, 필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전체 편성 시간의 5%에서 7%로 상향 조정</li> <li>* 지상파사업자, 종편·보도PP사업자</li> <li>–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비율(10%)을 모두 달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일정 수준의 재방송 편성에 대하여 '19년 고시개정을 통</li> </ul>

근거설명	<p>해 재방송비율 목표치(40%→35%→30%)를 단계적으로 3년간('19-'21년) 준수토록 하였으나, 해당 기한이 도래하여 목표치를 25% 이하로 재설정</p> <p>* 지상파(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등 제외), 종편·보도PP사업자</p> <p>-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준수를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의 일부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p> <p>* '22년 기준 한국수어방송 제작 소요금액 약 2,219백만원 중 977백만원 지원(약44.0%), 화면해설방송 제작 소요금액 약 3,938백만원 중 751백만원 지원(약 19.1%)</p> <p>- 일부 사업자는 이미 충분한 비율의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일부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은 장애인 방송물 편성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작이 증가 불가피함에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 인상 효과가 발생</p> <p>○ 한국방송공사는 본 규제 도입과 관계없이 지난 '21년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서”에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과제를 선정하여 수어방송과 화면해설방송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함</p> <p>* 장애인방송물과 관련된 방송사업자의 사업방향이 확인된 경우는 한국방송공사가 유일</p> <p>- 하지만, 한국방송공사의 수어방송편성비율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 의무비율을 상회하며, 화면해설방송 확대 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정된 재방송 편성비율 축소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방송사업자의 사업방향에 따라 제외되는 규제비용은 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한국방송공사 공적책무확대 사업계획서(2021년)</p> <p>과제 8.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p> <p>○ 장애인 정보 서비스와 다문화 및 외국인을 위한 언어 서비스 강화</p> <p>사업 세부내용</p> <p>1. 화면해설방송 확대로 시각 장애인의 다양한 미디어 접근성 제고</p> <p>○ 현재 방통위 고시 의무비율 10%(초방비율 6.5%, 2020년 기준)를 12%까지 확대(초방비율 7%, 2021년 기준)</p> <p>2. 수어방송 확대로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증대</p> <p>○ 메인뉴스인 KBS 뉴스9의 수어방송 개시(연간 18,500분 증가)에 이어 뉴스 수어방송 지속 확대</p> </div> <p>- 본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증가 및 화면해설 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로 인한 장애인 방송물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이며 이는 직접비용에 해당</p> <p>2) 직접비용 산출(장애인방송물 추가 제작 비용)</p> <p>○ 본 개정안에 따른 직접비용은 연간 17백만 원 발생</p>
------	---

근거설명

- 이는 한국수어방송 추가제작비용(2개사) 15,512,491원과 화면해설방송 추가제작비용(1개사) 1,878,520원의 합  
(방송사업자별 추가 제작 비용 추정액은 [별표 1]과 [별표 3]참조)
- 3년간 발생하는 직접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은 43백만원, 연간균등비용은 14백만원
- 구체적인 산출 과정은 아래 설명 참조
- 장애인 방송물 분당 제작 단가는 「장애인방송 고시」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라, 연도별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를 산정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명의로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매년 10월에 공고
- 장애인 방송물 분당 평균 제작 단가는 전체 장애인 방송물 제작비의 합을 장애인 방송 편성 시간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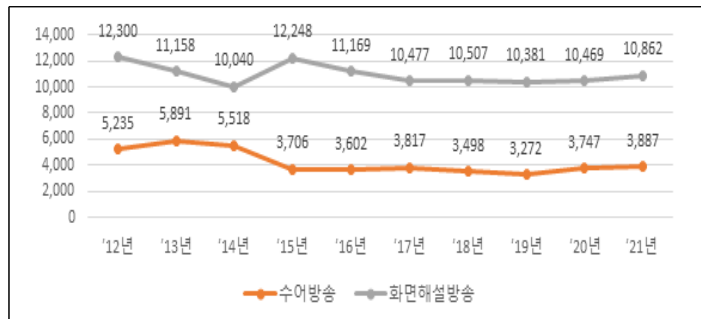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산정방식〉

$$\text{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단가} = \frac{\text{장애인방송물 제작비 총계}^D}{\text{장애인방송 편성시간 총계}^D}$$

- 1)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제작비(본방송 기준) 총계
  - 2) 개별사업자 장애인방송 편성시간(본방송 기준) 총계
-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참여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비 및 장애인방송 편성시간(본방송 기준) 적용

- 지난 10년간 장애인 방송물 평균 제작단가는 일관된 변동 추이를 보이지 않아 시장 변동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분석 기준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자료를 적용함
-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산정에 따른 '21년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의 분당 제작단가는 각 10,862원과 3,887원)

[그림] 장애인 방송물 분당 평균 제작 단가 추이('12~'21년)  
(단위: 원)



▶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자료

근거설명	<p>※ 연도별 장애인방송물 분당 평균제작비는 고시의무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용도이며, 실제 시장단가와 상이할 수 있음</p> <p>○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별 한국수어방송 추가 제작 비용추정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수어방송 추가제작 비용 = 방송프로그램 연간 편성 시간<sup>1)</sup> × max(7% -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0)<sup>2)</sup> × 한국수어방송 평균 제작단가</b></p> </div> <p>1) 최근 3년 연간 편성시간의 평균(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  2) 최근 3년 연간 한국 수어방송편성비율 평균이 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편성해야하는 비율(자료: 시청자 미디어재단)</p> <p>– 본 개정안의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피규제자는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PP사업자로 전체 사업자 수는 36개사</p> <p>– 사업자별 한국수어방송편성 비율은 연도별 차이가 있으며 변동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나, EBS,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연합뉴스TV, YTN, MBN, JTBC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는 이미 지난 3년간 본 개정안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무편성비율인 7%를 상회하는 수준의 한국수어방송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p> <p>– 따라서,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EBS,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연합뉴스TV, YTN, MBN, JTBC 7개 사로 판단됨</p> <p>※ 방송사업자 별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 및 추가제작 비용 산출액은 [별표1] 참조]</p> <p>– 하지만, 추가 제작비용이 정부 보조분의 지급액을 상회하는 사업자는 오비에스경인티브이와 JTBC 2개 사로 이들의 정부 보조분 지급액을 제외한 추가 제작비용의 합은 15,512,491원임</p> <p>– 본 개정안의 부칙은 개정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규제시행 시점을 고려하여 2022년 한국수어방송 추가 제작비용은 비용추정기준액의 50%인 7,756,245원으로 추정됨</p> <p>○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자별 화면해설방송 추가 제작비용의 추정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함</p>
------	---

근거설명

$$\text{화면해설방송 추가제작 비용} = \text{방송프로그램 연간 편성 시간}^{\text{①}} \times \max(\text{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text{②}} - 25\%, 0) \times \text{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비율}(10\%) \times \text{화면해설방송 평균 제작단가}$$

- 1) 최근 3년 연간 편성시간의 평균(자료: 방송산업실태조사)
- 2) 최근 3년 연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 평균이 25%를 상회하는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축소 편성해야하는 비율(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본 개정안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 축소에 따른 피규제자는 지상파(지역총국, 지역MBC, 지역민방 등 제외), 종합편성·보도전문PP사업자로 전체 사업자 수는 10개사이며,

- 최근 5년간 방송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편성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행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10%)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별표2 참고]

- 하지만, 사업자별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은 연도별 차이가 일관된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변동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지난 3년간 25%를 상회하는 방송채널은 KBS1, KBS2, SBS, MBN, 채널A 5개 채널로 나타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를 위하여 추가제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자는 KBS, SBS, MBN, 채널A 4개 사로 판단됨  
 - 화면해설방송 추가 제작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중 화면해설방송 추가 제작비용이 정부 보조분의 지급액을 상회하는 사업자는 KBS(KBS2 채널) 1개 사이며, 정부 보조분 지급액을 제외한 추가 제작비용은 1,878,520원으로 추정됨

※ 방송사업자 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 및 추가제작 비용 산출액은 [별표3 참조]

- 본 개정안의 부칙은 개정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규제시행 시점을 고려하여 2022년 화면해설방송 추가 제작비용은 비용추정기준액의 50%인 939,260원으로 추정됨

○ 본 개정안의 비용분석 기간은 3년임

- 본 개정안은 3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정부는 장애인방송서비스(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제공을 위해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

※ 추진근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방송법」 제69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근거설명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69조는 장애인방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정부 지원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 매년 변동되는 예산규모 및 방송사업자의 편성준수비용 등 정부 지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분석대상기간 2년차부터 정부 지원금이 제작비용을 상회하여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가정은 비용을 과소추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각 방송사업자에 대해 발생하는 규제비용이 고정적으로 분석대상기간 동안 매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을 추정함
-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비용 추정액은 2022년 8,695,505원 이며, 2023년, 2024년에는 17,391,011원으로 추정
- 3년간 발생하는 직접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은 약 41.26백만 원
  - 연간균등순편익은 약 14.36백만 원

〈표 1〉 규제비용분석표

규제비용분석				단위	백만원
				할인율	4.5%
구분	비용(-)	편액(+)	순비용	순비용현재가치	연간균등순비용
1년차	반복적/		9	9	
2년차	17		17	17	
3년차	17		17	16	
계			43.48	41.26	14.36

※ 규제시행시점(22년 하반기)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기간 1년차의 비용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연간비용의 50%로 추정

[별표 1] 방송사업자별 수어방송 편성 비율 및 개정안에 따른 추가 제작 비용 부담금

근거설명

구분	방송 사업자	'19년 (단위: %)	'20년 (단위: %)	'21년 (단위: %)	평균 편성 비율	추가 제작 비용	평균 연간 편성 시간 (단위:분)	추가제작 소요비용 추정액* (a)	정부 지원금 (b)	부담금 (max [a-b,0])
중앙 지상파	KBS	8.87	13.53	14.11	12.17	0.00	511,500	0	71,476	0
	MBC	7.45	7.38	9.78	8.20	0.00	458,878	0	44,509	0
	SBS	7.11	7.89	10.59	8.53	0.00	442,697	0	44,318	0
	EBS	6.34	5.88	6.77	6.33	0.67	469,039	12,237	52,876	0
지역 지상파	부산KBS	9.15	13.17	14.98	12.43	0.00	511,500	0	25,245	0
	창원KBS	8.92	13.13	13.60	11.88	0.00	511,500	0	14,907	0
	대구KBS	8.91	13.18	13.66	11.92	0.00	511,500	0	17,976	0
	대전KBS	8.90	13.58	14.07	12.18	0.00	511,500	0	25,689	0
	광주KBS	8.92	13.59	14.09	12.20	0.00	511,500	0	25,832	0
	전주KBS	8.91	13.55	14.05	12.17	0.00	511,500	0	24,319	0
	청주KBS	8.92	13.61	14.08	12.20	0.00	511,500	0	26,632	0
	춘천KBS	8.87	13.65	14.14	12.22	0.00	511,500	0	26,031	0
	계주KBS	8.87	13.28	11.15	11.10	0.00	511,500	0	15,790	0
	울산KBS	8.87	13.55	13.20	11.87	0.00	511,500	0	7,328	0
	충주KBS	8.92	13.62	14.08	12.21	0.00	511,500	0	0	0
	진주KBS	8.92	13.13	13.60	11.88	0.00	511,500	0	0	0
	강릉KBS	8.87	13.65	14.14	12.22	0.00	511,500	0	18,415	0
	원주KBS	9.32	13.74	14.14	12.40	0.00	511,500	0	0	0
	목포KBS	8.92	13.55	14.09	12.19	0.00	511,500	0	0	0
	순천KBS	8.92	13.59	14.09	12.20	0.00	511,500	0	0	0
	안동KBS	8.91	13.18	13.66	11.92	0.00	511,500	0	0	0
	포항KBS	8.91	13.18	13.66	11.92	0.00	511,500	0	0	0
	MBC강원영동	9.96	8.92	9.75	9.54	0.00	468,610	0	0	0
	MBC경남	7.07	6.54	9.62	7.74	0.00	464,548	0	6,707	0
	MBC충북	7.79	7.45	10.19	8.48	0.00	469,620	0	10,101	0
	광주MBC	7.54	7.03	9.67	8.08	0.00	467,368	0	12,625	0
	대구MBC	7.91	7.05	10.29	8.42	0.00	443,790	0	20,453	0
	대전MBC	8.11	8.13	10.43	8.89	0.00	443,817	0	12,004	0
	목포MBC	9.16	7.17	9.87	8.73	0.00	468,632	0	15,930	0
	부산MBC	7.45	6.04	8.92	7.47	0.00	450,007	0	11,348	0
	안동MBC	8.03	6.77	11.18	8.66	0.00	443,729	0	0	0
	여수MBC	8.21	7.88	10.67	8.92	0.00	444,582	0	12,722	0
울산MBC	6.96	6.09	9.03	7.36	0.00	454,323	0	7,202	0	
원주MBC	7.74	8.15	10.84	8.91	0.00	459,048	0	0	0	
전주MBC	7.32	7.40	9.26	7.99	0.00	455,578	0	9,346	0	



근거설명

구분	방송사업자	'19년 (단위: %)	'20년 (단위: %)	'21년 (단위: %)	평균 편성 비율	추가 제작 비율	평균 연간 편성 시간 (단위:분)	추가제작 소요비용 추정액* (a)	정부 지원금 (b)	부담금 (max [a-b,0])
지역 지상파	제주MBC	7.90	7.29	10.89	8.69	0.00	454,207	0	9,428	0
	춘천MBC	8.74	8.08	10.38	9.07	0.00	468,598	0	14,245	0
	포항MBC	7.61	6.51	9.20	7.77	0.00	468,497	0	0	0
	KNN	7.07	7.19	8.60	7.62	0.00	442,153	0	0	0
	대구방송	8.04	8.13	10.24	8.80	0.00	442,385	0	17,320	0
	대전방송	6.98	7.25	10.45	8.23	0.00	443,066	0	20,066	0
	광주방송	7.45	7.33	8.70	7.83	0.00	445,210	0	15,768	0
	울산방송	8.05	8.40	10.15	8.87	0.00	442,458	0	14,310	0
	전주방송	6.34	6.50	9.41	7.42	0.00	445,744	0	9,137	0
	청주방송	7.63	6.91	10.64	8.39	0.00	442,950	0	6,282	0
	제주방송	6.47	5.81	7.57	6.62	0.38	432,721	6,471	7,350	0
	G1	7.01	7.24	8.40	7.55	0.00	452,343	0	10,670	0
OBS경인TV	4.22	4.24	4.80	4.42	2.58	446,343	44,751	33,020	11,71	
보 도 P P	연합뉴스TV	5.81	6.81	6.25	6.29	0.71	526,080	14,551	17,593	0
	YTN	5.35	6.95	6.94	6.41	0.59	526,080	11,997	35,202	0
중 편 채 널	MBN	5.26	5.80	5.87	5.64	1.36	526,080	27,733	39,593	0
	JTBC	5.27	5.42	5.51	5.40	1.60	526,020	32,714	28,932	3,782
	TV조선	5.72	6.94	7.04	6.57	0.43	511,443	8,615	40,357	0
	채널A	6.02	7.14	9.40	7.52	0.00	519,087	0	32,566	0
<b>총 계</b>							<b>159,069</b>		<b>15,513</b>	

\* '22년 기준, 단위: 천원

[별표 2] 방송사업자별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 실적(단위: 백분율, %)

방송사업자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KBS	13.8	12.2	12.9	13.3	12.7
MBC	10.0	11.6	12.2	14.4	14.0
SBS	10.4	10.7	11.7	11.3	11.3
EBS	12.8	12.4	11.6	11.1	13.2
연합뉴스TV	10.9	11.2	11.5	12.2	12.3
YTN	11.2	11.1	11.5	12.0	11.2
MBN	11.9	17.1	17.4	15.8	13.9
JTBC	12.8	15.0	11.3	10.4	12.8
TV조선	10.4	10.3	15.6	12.3	12.5
채널A	15.1	13.6	14.7	20.6	19.6

▶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 열린경영/사전정보 공표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자료

[별표3] 방송사업자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 및 개정안에 따른 추가 제작 비용 부담금										
근거설명	방송 채널	'19년 (단위:%)	'20년 (단위:%)	'21년 (단위:%)	평균 재방송 편성 비율	추가 제작 시간 비율	평균 전체 편성 시간 (단위: 분)	추가 제작 소요 비용 추정액 *(a)	정부 지원금 (b)	부담금 (max [a-b, 0])
	KBS1	37.00	22.70	21.70	27.13	0.21	511,500	11,853	50,411	0
	KBS2	40.70	40.70	19.50	33.63	0.86	464,595	43,568	41,689	1,879
	MBC	24.10	11.30	27.60	21.00	0.00	458,878	0	62,366	0
	SBS	26.90	28.50	26.70	27.37	0.24	442,697	11,380	64,272	0
	EBS	16.10	31.50	7.70	18.43	0.00	469,039	0	67,167	0
	연합뉴스	0.00	0.00	0.00	0.00	0.00	526,080	0	9,578	0
	YTN	0.00	0.00	0.00	0.00	0.00	526,080	0	3,733	0
	MBN	29.80	33.40	35.70	32.97	0.80	526,080	45,524	64,795	0
	JTBC	31.10	27.40	15.10	24.53	0.00	526,020	0	80,162	0
	TV조선	0.00	14.30	10.90	8.40	0.00	511,443	0	46,298	0
	채널A	37.80	20.50	39.30	32.53	0.75	519,087	42,475	61,104	0
총계							154,800		1,879	

\* '22년 기준, 단위: 천 원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 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방송접근권 격차 해소																																										
편익항목	사회적 약자 보호																																										
일시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에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 인권 제고에 기여</p> <p>－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청력·시력이 약화된 고령자(일반국민) 등 사회적 약자의 방송접근권 취약 문제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장애인방송 기능·역할의 확대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시각·청각장애인 현황('22년 6월 기준)〉 (단위: 명,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1f5fe;">구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h>2021년</th> <th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e1f5fe;">비율</th> </tr> </thead> <tbody> <tr> <td><b>전체 인구</b></td> <td><b>51,826,059</b></td> <td><b>51,849,861</b></td> <td><b>51,829,023</b></td> <td><b>51,638,809</b></td> <td></td> </tr> <tr> <td>전체 장애인</td> <td>2,585,876</td> <td>2,618,918</td> <td>2,633,026</td> <td>2,644,700</td> <td>5.12</td> </tr> <tr> <td>  시각</td> <td>252,957</td> <td>253,055</td> <td>252,324</td> <td>251,620</td> <td style="background-color: #e1f5fe;">9.51</td> </tr> <tr> <td>  청각</td> <td>342,582</td> <td>377,094</td> <td>395,789</td> <td>411,749</td> <td style="background-color: #e1f5fe;">15.57</td> </tr> <tr> <td>  소 계</td> <td>595,539</td> <td>630,149</td> <td>648,113</td> <td>663,369</td> <td style="background-color: #e1f5fe;">25.08</td> </tr> <tr> <td><b>고령인구 (65세이상)</b></td> <td><b>7,366,085</b></td> <td><b>7,688,994</b></td> <td><b>8,151,867</b></td> <td><b>8,571,347</b></td> <td>16.60</td> </tr> </tbody> </table> <p>※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span style="background-color: #ffe0b2;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전체 인구 대비, <span style="background-color: #e1f5fe;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 전체 장애인 대비</p> <p>○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은 국민불편 해소라는 규제개선 측면에서 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p> <p>－ 한국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문자(텍스트)를 읽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증대하는데 기여</p> <p>○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는 방송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시의 불편을 해소하여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미디어 접근성 제고</p> <p>○ 종합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을 확대하여 방송소외계층인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방송접근권 제고에 기여</p>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율	<b>전체 인구</b>	<b>51,826,059</b>	<b>51,849,861</b>	<b>51,829,023</b>	<b>51,638,809</b>		전체 장애인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5.12	시각	252,957	253,055	252,324	251,620	9.51	청각	342,582	377,094	395,789	411,749	15.57	소 계	595,539	630,149	648,113	663,369	25.08	<b>고령인구 (65세이상)</b>	<b>7,366,085</b>	<b>7,688,994</b>	<b>8,151,867</b>	<b>8,571,347</b>	16.60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율																																						
<b>전체 인구</b>	<b>51,826,059</b>	<b>51,849,861</b>	<b>51,829,023</b>	<b>51,638,809</b>																																							
전체 장애인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5.12																																						
시각	252,957	253,055	252,324	251,620	9.51																																						
청각	342,582	377,094	395,789	411,749	15.57																																						
소 계	595,539	630,149	648,113	663,369	25.08																																						
<b>고령인구 (65세이상)</b>	<b>7,366,085</b>	<b>7,688,994</b>	<b>8,151,867</b>	<b>8,571,347</b>	16.60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https://www.crms.go.kr/>.

국무조정실(2019), 『201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국무조정실·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7),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각 연도.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wage.g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0), 『2020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0), 『2019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21), 『앱마켓 생태계의 이용자보호 방안 도출』

\_\_\_\_\_ , 『2019년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조사 보고서』

\_\_\_\_\_ , 『2020년 인터넷플랫폼시장 주요 이슈 도출 및 분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20),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통계조사』(대외비)

조선일보(2021. 3. 19. 보도), 구글·애플 “개인 검색 이력 못준다” 패닉에 빠진 폐북·광고업계.

조선일보(2021. 6. 4. 보도), 애플, 국내 앱스토어 총매출 이제야 공개... 수수료엔 침묵.

● 저 자 소 개 ●

---

신 지 형

- Univ. of Florida 통계학 학사/석사/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 민 선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언론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황 유 선

-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호 정

-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03

2022년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

(The Study on 'Cost-in, Cost-out' System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in 2022)

---

---

2022년 12월 일 인쇄

2022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인쇄 인성문화

---